



6 외국인등록 증명서의 반납

6-1 출국할 때

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때는 출국하는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반납합니다.
재입국허가를 받아 둔 경우에는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.

6-2 일본국적이 되었을 때

14 일 이내에 본인이 거주지의 시구청촌 사무소에 반납합니다.

※ 일본국적 취득증명 또는 법무국에서 교부된 귀화자의 신분증명이 필요합니다.

6-3 사망했을 때

사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동거 가족이 거주지의 시구청촌 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반납합니다.

※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증명이 필요합니다.

※ 사망한 외국인의 거주지가 사망지하고 다른 경우에는, 사망지에 속한 시구청촌장을 경유해서 반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